

문서번호	서울어린이대공원-315
보존기간	운영구
결재일자	2016.01.18.
공개여부	공개

★주임	팀장	서울어린이대공원장	문화체육본부장	
협 조				

서울어린이대공원

기념품판매점 사용 · 수익허가 계획

2016.

서울어린이대공원 기념품판매점 사용 · 수익허가 계획

서울어린이대공원 기념품판매점의 사용 · 수익허가 기간이 2016.1.10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원 이용객의 이용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,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수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I 추진 방향

□ 추진배경

- 공원 내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기념품판매점을 계속적으로 유치하여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원을 확보.

□ 기념품판매점 현황

○ 운영현황

구 분	사용수익 허가기간	허가면적	위치	사용료(2년) (부가세포함)	운영자 선정방식	운영자
기념품 판매점	2013.10.5 ~ 2016.1.10	57.33㎡	열대 동물관 앞	금80,210천원 (40,105천원/연간)	일반경쟁 계약	뮤지엄하임 박○○

○ 시설현황



○ **변경(수정)계약 체결(2회)**

- 2014년 초 AI발생 관련 한시적 운영중단 휴업기간 보상을 위한 수정계약 체결(2014.6.16)
 - 변경(수정) 계약기간 : 2015.10.5~2015.11.27 <54일간 연장>, 사용료 면제
- 2015년 동물원 휴장 관련 영업중단 휴업기간 보상을 위한 수정계약 체결(2015.8.28)
 - 변경(수정) 계약기간 : 2015.11.28~2016.1.10 <44일간 연장>, 사용료 면제

II

세부 운영계획

운영개요

- **운영방법** : 사용·수익 허가 방식
- **설치장소** : 열대 동물관 앞 (기존 허가 위치와 동일) * 별첨
- **허가기간**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
 - ※ 다수의 경쟁입찰 유도를 위해 다년간 허가
- **사 용 료** : 감정평가 실시하여 입찰 예정가격 결정
 - 1차년도 : 최고입찰가(낙찰가)로 부과
 - 2차년도 :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[[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] × (해당 연도의 재산가격) ÷ (입찰 당시의 재산가격)]
- **선정방법** : 공개경쟁입찰(최고가 입찰)
 - ※ 공유재산법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,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1조(최고가 입찰)

사용·수익허가 조건

- **판매부스는 운영자 설치조건부** : 단, 부스 디자인 및 색상은 상호 협의(공원 승인)
- **공원 이미지와 신뢰성 향상을 고려하여 통일된 근무복 착용**
- **이용(판매)요금 어린이대공원과 협의 후 결정**
- **판매품목** : 동물캐릭터, 동물인형, 동물기념품에 한함

Ⅲ

추진 일정

2015.12.23 ~	· 감정평가 의뢰
2015.12.30 ~	· 일상감사 의뢰(감사실)
2016.01.18	· 사용·수익허가조건 등 심의요청(총무처, 기획조정실)
2016.01.27	· 입찰공고 및 운영자 선정
2016.02.00	· 운영개시

※ 유찰 등 사정 변경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[별첨]

(설치장소 : 열대동물관 광장 앞)

